

전주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1161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진현덕

피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22. 5. 19.

판결 선고 2022. 6. 16.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177,941원 및 그 중 249,677,795원에 대하여는 2020. 7. 20.부터, 274,710,818원에 대하여는 2020. 12. 1.부터 각 2021. 4. 28.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접수 제67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중 '전주지방법원 남원등기소'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9. 30. 'D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억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9. 30.부터 2023. 9. 2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D 영농조합법인에게 보증금액 9억 9,000만 원, 보증기한 2023. 9. 29., 채권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무렵 피고 B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 영농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D 영농조합법인은 2014. 9. 30.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E에서 돈을 대출받았다.

2) D 영농조합법인은 2015. 2. 24.경 그 상호가 '영농조합법인 F'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5. 10. 7. '영농조합법인 F(상호 변경 전 : D 영농조합법인)'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5. 10. 7.부터 2016. 10. 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영농조합법인 F에게 보증금액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6. 10. 6.,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신용보증기간이 2020. 9. 29.까지로 연장되었다.

그 무렵 피고 B은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영농조합법인 F(상호 변경 전 : D 영농조합법인)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다.

4) D 영농조합법인(변경 후 상호 : 영농조합법인 F)은 이 사건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그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돈, D 영농조합법인(변경 후 상호 : 영농조합법인 F)의 미납된 보증료, 위약금 등을 변제 내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참조).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신용보증채무 이행

1) 영농조합법인 F(변경 전 상호 : D 영농조합법인)는 2016. 9. 30.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조직변경을 하고 해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 영농조합법인(변경 후 상호 : 영농조합법인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였다.

피고 회사는 E에 대한 위 대출채무의 이자를 2019. 9. 29.경부터 계속 연체하는 등으로 2020. 5. 4. 부실처리되었다.

2) 원고는 2020. 7. 20. E에게 피고 회사의 E에 대한 위 대출채무 250,247,427원을 대위변제하고서 그 무렵 569,632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0. 12. 1.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무 274,710,8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위 각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고서 지출하게 된 채권보전비용(대지급금) 중 917,814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확정손해금 124원이 발생하였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 미납으로 인한 위약금은 871,390원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2019. 4. 1. 이후 연 8%이다.

다. 피고 B와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피고 B은 2019. 4.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9. 4. 12.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접수 제67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회사의 재산상태

남원시 G, H 양 지상 I동, J동 및 K동 각 건물은 원래 D 영농조합법인(변경 후 상호 : 영농조합법인 F)의 소유이었다가, D 영농조합법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로 조직변경되고 해산됨에 따라 피고 회사의 소유로 되었다.

한편, 위 3동의 건물들에 관하여는 2015. 1. 20.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 채무자 D 영농조합법인으로 한 E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8. 10. 1.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피고 회사로 한 L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E은 2020. 8.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위 3동의 건물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M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20. 8.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등 채무 합계 526,177,941원[= 미회수 대위변제금 524,388,613원(= E에 대한 대위변제금 250,247,427원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274,710,818원 - 회수금 569,632원) + 미회수 채권보전비용(대지급금) 917,814원 + 위약금 871,390원 + 확정손해금 124원] 및 그 중 E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중 미회수금 249,677,795원(= 위 250,247,427원 - 위 회수금 569,632원)에 대하여는 위 대위변제일인 2020. 7. 20.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위 274,710,818원에 대하여는 위 대위변제일인 2020. 12.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21. 4. 28.까지 약정지연손해금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원고의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각 체결된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약 5개월 후인 2019. 9.경부터 피고 회사가 E에 대한 위 대출채무의 이자를 계속 연체하였고, 이에 E이 2020. 4. 27. 신용보증사고 통지서로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는데, 당시 위 신용보증사고 통지서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E에 대한 대출 채무 잔액은 733,320,000원이었고, 이와 같은 사정 등으로 피고 회사가 2020. 5. 4. 부실처리 되었으며, 또한 피고 회사의 사실상 전 재산으로 보이는 위 3동의 건물들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E 내지 L조합 명의로 상당히 거액(채권최고액 합계 15억 1,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던 정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피고 회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20. 7. 20. 내지 2020. 12. 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과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각 대위변제금 합계 524,958,245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하여 위 구상금 등 채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하여 위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비교적 가까운 장래인 2020. 7. 20.과 2020. 12. 1.에 피고 회사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권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 C의 악의 추정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과 약 400만 원 상당의 2011년식 포터 II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B은 2019. 4. 12.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에서 본 피고 회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도 이를 알았다고 할 수 있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 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 C는, 피고 C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4,000여만 원 및 피고 C가 피고 회사에게 2017. 6. 7. 및 2017. 8. 28.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한 후에 위 임금 등 채권과 관련하여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C가 주장하는 위 임금채권과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는 피고 B이 아닌 피고 회사인 점, 피고 B와 피고 C의 신분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B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행순

판사김현지

판사한지숙

별지